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
	보고	2018. 4. 10.(화) 조간	배포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경영 부국장(3145-8129), 권순표 수석(3145-8526)	

제 목 :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
 -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, 절대 속지 마세요!

I 현 황

- **(신고·상담 현황)** '17년중 금감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」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·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(514건) 대비 198건(38.5%) 증가
 -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여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·상담 건수가 급증('16년 53건 → '17년 453건, 400건↑)
- **(수사의뢰 현황)** '17년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(151건)과 유사한 수준

※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및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신고·상담 건수 증가 대비 수사의뢰 건수 증가는 미미

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·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

(단위 : 건)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
신고·상담	253	514	712
수사의뢰	110	151	153

⇒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·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

가.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일반적인 특징

- ①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
- ②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
- ③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
- ④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

나. 주요 사기수법 유형

□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

- 가상통화 공개·채굴·투자, FX마진거래·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 투자, 부동산 개발·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나, 아무 근거가 없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

※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·허가 서류 제시, 공장 방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으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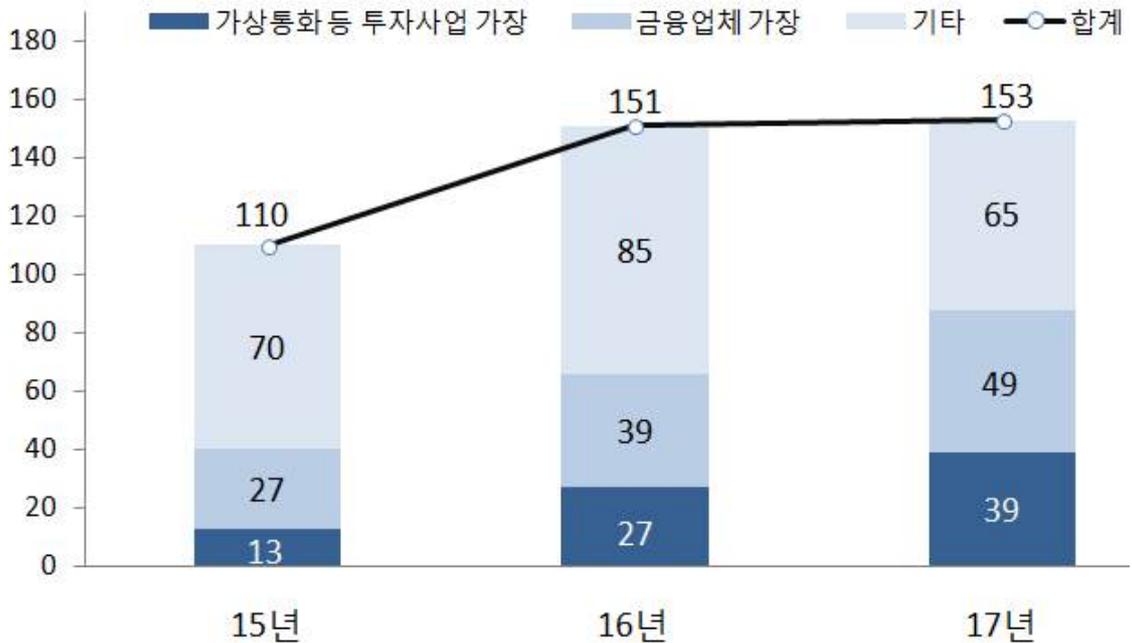
□ '17년중 가상통화 열풍을 빌미로 가상통화 공개·채굴·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급증('16년 27건 → '17년 39건 : 12건↑, 44.4%↑)

- 종합금융컨설팅, FX마진거래*, 핀테크, 증권투자 등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('16년 39건 → '17년 49건 : 10건↑, 25.6%↑)

* FX마진거래(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)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

- 기타 부동산 투자,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('16년 85건 → '17년 65건 : 20건↓, 23.5%↓)

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회 건수



※ 붙임 :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분류

다. 지역분포

- '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서울 (93개), 경기(26개) 등 수도권(120개, 전국의 78.4%)에 집중
 - 서울지역은 강남(44개), 서초(14개) 등 강남 2개구에 58개 업체(서울시의 62.4%)가 위치
- 전년 대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부산,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

유사수신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

(단위: 개)

구 분	서울	경기	인천	부산	광주	대전	대구	기타	합계
'16년	94	8	2	3	-	3	2	39	151
'17년	93	26	1	11	4	2	-	16	153
증감	△1	18	△1	8	4	△1	△2	△23	2

가. 가상통화 공개·채굴·투자 등 가장

- (가상통화 공개)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통화 공개(Initial Coin Offering ; ICO) 등을 통해 곧 수백배 가격이 상승한다면서 자금을 모집

◆ (A업체 사례)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며 자금을 모집

-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내세우면서 동 가상통화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새로운 가상통화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임

- (가상통화 채굴) 가상통화 채굴기를 구입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채굴(Mining)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자금을 모집

◆ (B업체 사례)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채굴기 1대당 330~480만원에 구입하여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

- 이들은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 구입하였고 채굴한 가상통화도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

- (가상통화 투자)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매(Trading) 전문업체로 투자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

◆ (C업체 사례)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

- 동 업체는 알파고가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○○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% 수익을 약속

나. 금융업체 가장

-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FX마진거래,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금융업체로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

◆ **(D업체 사례)** 자체 개발한 FX마진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면 승률이 100%라며 절대 손해 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자금을 모집

-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허위의 그래프를 보여 주며 원금보장과 월 2.5%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기망

◆ **(E업체 사례)** 인공지능(AI) 로봇을 개발하였다며 알파고가 투자금을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면서, 확정수익으로 월 3.2%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보장형 투자라고 호도하면서 자금을 모집

다. 기타 부동산 투자, 쇼핑몰 운영 등을 가장

-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를 가장하면서 부동산 개발·매매나 관련 부실 채권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
- 남다른 사업운영 경험으로 쇼핑몰 사업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투자자를 현혹

◆ **(F업체 사례)**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광산에서 발생한 석재를 채취하여 방조제 매립에 사용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며, 사업비로 1구좌 당 3,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등기를 해주고 매월 55만원(연 22%)씩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

◆ **(G업체 사례)** 중국정부 특별법에 의해 전자상거래 직판회원 제1호로 허가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업체로 회원이 42만명(한국 회원 5만명)이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고 회원 가입하면, 원금과 수익(매주 5%)을 보장해 준다고 호도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

IV

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**(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)**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므로
 -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 소비자정보포털 **파인**에서 반드시 확인*하고,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
 - * 인터넷에서 **파인** 두 글자를 치고 “제도권 금융회사 조회” 메뉴에서 확인
- ② **(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)**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 선전*하고 있으므로
 - *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광고홍보하는 등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
 -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·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
- ③ **(투자전 사전 문의)**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사기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하므로
 - 뭔가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(☎1332)」에 문의
- ④ **(피해시 즉시 신고)**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(☎1332)」에 제보
 -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

(단위 : 개)

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	'15년	'16년	'17년
① 금융업체 가장 ▶ 종합금융 컨설팅, FX마진거래, 핀테크,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, 예적금 등	27	39	49
② 가상통화 등 투자사업 가장 ▶ 가상통화, 전자금융, 크라우드펀딩 등	13	27	39
③ 부동산 사업 가장 ▶ 부동산 경매사업, 임야 공동구매, 펜션·고급빌라 개발, 명품매장, 해외카지노, 상가, 건설 등	14	4	12
④ 제조·조립·판매사업 가장 ▶ 전기 오토바이(자전거), 전기 특허품, 바이오제품, 의료기기, 외국완구, 게임기, 특허기술 개발 등	13	13	6
⑤ 조합 사업 가장 ▶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, 계조직, 상조회 등	15	5	7
⑥ 기타 사업 가장 ▶ 쇼핑몰, 상품권 판매, 보석광산 개발, 수목장, 골드바 유통, 납골당 분양, 골동품 거래 등 ▶ 커피 사업, 특수작물 재배, 해외여행, 스크린 경마장, 자동차 대여, 국산담배 매집, 스크린 골프 등	28	63	40
합 계	110	151	153